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긴급한 상황에서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2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종득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09.
3. 회부연월일 : 2025. 12. 10.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확산 속도가 빠른 산불은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 소방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 Ⅲ. 검토의견

#### 1. 긴급한 상황에서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소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개정안은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서장 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생략)                                                                                                                                                            |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현행과 같음)                                                                                                                   |
| ② <u>전담의용소방대원</u>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u>전담의용소방대장</u> 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u>의용소방대원(전담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한다)</u> -----<br>-----<br>-----<br>-----<br>----- <u>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한 경우에는 전담의용소방대장을 말한다)</u> -----. |
| ③ . ④ (생략)                                                                                                                                                                        |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부칙<br>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2조제1항 및 제2항).

###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sup>1)</sup>>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2항<sup>2)</sup>

○ 임무

-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각종 행사장 안전지원 활동,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분 및 역할

| 구분                     | 역할                                                       |
|------------------------|----------------------------------------------------------|
| 일반 의용소방대               |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
| 전문 의용소방대 <sup>3)</sup> |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 보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
| 전담 의용소방대 <sup>4)</sup> |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2024.12.31. 기준):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자료: 소방청)

1) 의용소방대 제도 개요는 [참고] 참조

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한편 현행법은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 거리 등을 고려해서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함)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제2조제4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일반적인 의용소방대와 달리, 전담의용소방대는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고(제10조제2항5),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를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수성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격자로 구성·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한 종류임

※ 중장비 전문의용소방대, 산악 전문의용소방대, 수난 전문의용소방대 등

4) 전담의용소방대는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음.

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담의용소방대는 별도의 소방장비를 구비하고(시행규칙 제2조제3항) 소방장비 조작 및 화재진압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6).

소방청은 농·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 등 정규 소방력이 부족하고

- 
-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가. 의용소방대 제도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다. 위험물 및 전기·가스 안전관리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가. 수난(水難) 구조  
나. 산악 구조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6. 9.>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2019. 1. 3., 2020. 3. 13.>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 6. 9.>

소방관청의 관할 면적이 넓거나 소방관청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은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소방 출동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소방 출동대가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담의용소방대가 초기 화재 진압 및 대응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라고 설명함.

## <전담의용소방대 제도>

○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항

○ 일반의용소방대와의 차이점

-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소집 명령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 수행(제10조제1항 및 제2항)
- 별도의 소방장비 구비(시행규칙 제2조 제3항 및 [별표1])

| 구 분  | 종 류                                  | 보유기준       |
|------|--------------------------------------|------------|
| 기동장비 | 소방펌프차(소방펌프설비와 물탱크 및 소화약제가 탑재된 자동차) 등 | 1대 이상      |
| 진압장비 | 수동식 소화기(3.3Kg이상)                     | 2대 이상      |
|      | 소방호스(40mm / 65mm)                    | (10/5)본 이상 |
|      | 관창, 결합금속구 등                          | 3개 이상      |
| 구조장비 | 사다리                                  | 1개 이상      |
| 보호장비 | 공기호흡기, 방화복,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 3착 이상      |

※ 일반의용소방대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급장비 기준이 없음

- 보다 전문적인 교육훈련 시행(시행규칙 제18조)

| 구 분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전담대교육                               |
|--------------|-------------------------------------|--------------------------------|-------------------------------------|
| 교육 시간        | 신규임용 후 2년 이내 36시간 이수                | 기본교육 이수한 후 연 12시간 이수           | 기본교육 36시간 이수 후 매월 2시간 이상 이수(연 24시간) |
| 교육 내용        | 화재진압 사용방법<br>위험물 및 전기, 가스<br>안전관리 등 | 수난구조, 산악구조<br>소방자동차 구조<br>및 점검 |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                       |
| 비고<br>(교육대상) | 일반의용소방대<br>전담의용소방대                  | 일반의용소방대                        | 전담의용소방대                             |

○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현황: 전국 11개 시·도<sup>7)</sup> 195개대 4,271명

| 구 분 | 총계  |       |       | 지역별 설치 대수 |                |
|-----|-----|-------|-------|-----------|----------------|
|     | 대수  | 정원    | 현원    | 섬지역       | 산림인접지역 등 원거리지역 |
| 총 계 | 195 | 6,112 | 4,271 | 16        | 179            |
| 남성대 | 155 | 4,912 | 3,334 | 8         | 147            |
| 여성대 | 0   | 50    | 0     | 0         | 0              |
| 혼성대 | 40  | 1,200 | 937   | 8         | 32             |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전담의용소방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 없이도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산불과 같이 확산 속도가 빠른 화재의 경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자율적인 초기 진압을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 현 행      | 개정안       |
|----------|-----------|
| 전담의용소방대원 | 모든 의용소방대원 |

다만, 개정안은 전담의용소방대원 제도의 도입 취지와 화재 현장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먼저, 모든 의용소방대원에게 초기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화재진압 등 소방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소방관서의 관할 면적이 넓거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재난현장에

7) 시도별 설치현황:

- 대구 1, 인천 6, 경기 7, 강원 4, 충북 29, 충남 76, 전북 3, 전남 5, 경북 37, 경남 24, 제주 3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1분~ 2분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소방관서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하고 소방펌프차 등 소방장비를 지급하여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화재 진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의용소방대 제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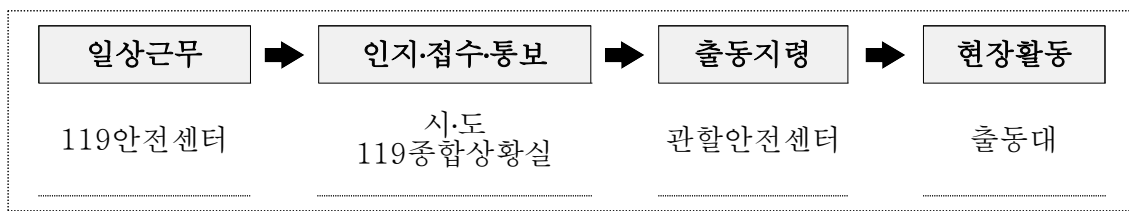
이와 같은 전담의용소방대 제도 취지를 감안할 때, 소방관서의 관할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고 소방공무원으로 조직된 소방대의 출동이 비교적 신속한 도시 지역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용소방대원에게 소집명령 없이 자체 화재진압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화재신고 접수 후 현장도착 시간>

- 전국 평균 현장도착시간: 7분 20초 전후
- 특·광역시(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5~6분대
- 도단위(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7~8분대

| 구 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 <b>전국</b> | <b>0:07:06</b> | <b>0:07:10</b> | <b>0:07:23</b> | <b>0:07:15</b> |
| 서울        | 0:04:58        | 0:04:59        | 0:05:02        | 0:04:59        |
| 부산        | 0:06:06        | 0:05:56        | 0:05:55        | 0:05:37        |
| 대구        | 0:05:44        | 0:05:22        | 0:05:32        | 0:05:28        |
| 인천        | 0:06:14        | 0:06:05        | 0:06:04        | 0:06:10        |
| 광주        | 0:05:55        | 0:05:55        | 0:06:08        | 0:06:01        |
| 대전        | 0:05:58        | 0:05:53        | 0:05:50        | 0:05:44        |
| 울산        | 0:07:13        | 0:06:55        | 0:06:58        | 0:06:44        |
| 세종        | 0:06:25        | 0:06:27        | 0:06:38        | 0:05:52        |
| 경기        | 0:07:22        | 0:07:37        | 0:07:55        | 0:07:51        |
| 경기북부      | 0:07:29        | 0:07:31        | 0:08:49        | -              |
| 강원        | 0:08:34        | 0:09:13        | 0:08:59        | 0:09:11        |
| 충북        | 0:08:51        | 0:08:45        | 0:07:33        | 0:08:29        |
| 충남        | 0:07:52        | 0:07:53        | 0:07:44        | 0:07:12        |
| 전북        | 0:07:36        | 0:07:37        | 0:08:46        | 0:07:34        |
| 전남        | 0:08:19        | 0:08:34        | 0:09:51        | 0:08:45        |
| 경북        | 0:09:11        | 0:09:07        | 0:07:42        | 0:09:17        |
| 경남        | 0:07:23        | 0:07:31        | 0:07:04        | 0:07:28        |
| 제주        | 0:07:09        | 0:07:14        | 0:06:34        | 0:07:21        |
| 창원        | 0:06:15        | 0:06:22        | 0:06:22        | 0:08:55        |

### <화재발생시 소방대 출동 절차도>



(자료: 소방청)

다음으로 화재현장의 위험성과 의용소방대원의 안전 확보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화재현장은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위험 요소가 상존하므로 효과적인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소방대원이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고 현장 지휘를 담당하는 소방대장의 전문적인 지휘·통솔 역량도 필수적임. 이러한 이유로 현행 제도는 비상근(非常勤) 인력인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을 화재진압의 보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모든 의용소방대원이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와 같이 일정 수준의 소방장비 확보와 소방장비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sup>8)</sup>. 그러나 소방장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교육훈련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장의 지휘가 없는 상황에서 초기 화재 대응을 할 경우, 화재 진압의 실효성 저하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원 본인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의 보조 조직으로 자체적으로 현장 활동을 수행할 경우 안전사고 및 현장 지휘체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8)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현황은 [참고] 참조

문 의 처

02)6788-5351

(자료: 소방청)

■ 의용소방대 정의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는 조직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와 역할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보조
- ② 구조·구급 업무 보조
- ③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 보조
- ④ 화재예방 업무 보조
- 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⑥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⑦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정년 : 65세

■ 소집수당

- ①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 지원 등 “의용소방대법” 상의 임무 수행 시 소집수당 지급(소방위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단가)
- ② 그 밖의 교육·훈련 및 월례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여비 지급(공무원 여비지급기준 준용)

■ 의용소방대 조직

- 조직구성 : 의용소방대는 대장, 부대장, 부장, 반장, 대원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의 구분 및 역할

| 구 분             |             | 역 할                                                     |
|-----------------|-------------|---------------------------------------------------------|
| 일반<br>의용<br>소방대 | 남성<br>의용소방대 |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 각종 소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      |
|                 | 여성<br>의용소방대 |                                                         |
|                 | 혼성<br>의용소방대 |                                                         |
|                 | 지역<br>의용소방대 |                                                         |
| 전문 의용소방대        |             | 산악, 하천 등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자격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여 재난현장 등에서 소방활동 |
| 전담 의용소방대        |             |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소방활동              |

○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 전국 18개 시·도 3,979개대 92,484명

(2024.12.31. 기준)

| 구 분   | 계      | 남성<br>의용소방대 | 여성<br>의용소방대 | 혼성<br>의용소방대 | 지역·전문·전담 |
|-------|--------|-------------|-------------|-------------|----------|
| 대수(대) | 3,979  | 1,419       | 1,306       | 172         | 1,082    |
| 현원(명) | 92,484 | 35,571      | 30,742      | 4,281       | 21,890   |

○ 2024년도 활동성과 : 270,137회 1,286,330명 활약

| 구 분       | 총 계       | 화재             |                | 구조·<br>구급 | 예방활동<br>(훈련·홍보·순찰·경계근무 등) |                |                |            |
|-----------|-----------|----------------|----------------|-----------|---------------------------|----------------|----------------|------------|
|           |           | 화재<br>진압<br>보조 | 재난<br>활동<br>보조 |           | 화재<br>예방                  | 행사<br>안전<br>지원 | 생활<br>안전<br>지원 | 홍보 및<br>기타 |
| 횟수<br>(회) | 270,137   | 6,447          | 1,386          | 5,712     | 88,902                    | 34,815         | 41,872         | 91,003     |
| 인원<br>(명) | 1,286,330 | 33,539         | 8,495          | 27,050    | 446,142                   | 145,443        | 198,567        | 427,094    |

○ 의용소방대원 교육훈련

- 근 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 교육시간

- 전담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실시(연간 24시간)
- 신규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기본교육 36시간(2년간 / 연 18시간)
-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전문교육 연 12시간

- 교육내용

- 기본교육

| 교과목(기본교육)   | 교육내용                                                         |
|-------------|--------------------------------------------------------------|
| 화재의 성상      | 연소이론, 화재 및 소화이론, 화재 시 행동패턴                                   |
| 소방시설        |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br>옥내·옥외소화전 사용법, 소방용수시설 점검 및 사용법 |
| 응급처치        | 응급처치 개요 및 심폐소생술, 기본 응급처치(질 환)<br>기본 응급처치(사고)                 |
|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 구조활동 개요, 피난구조장비 사용법<br>생활안전활동 유형과 활동요령                       |
| 현장활동 안전관리   | 안전사고의 개념, 현장활동 안전관리<br>안전사고 발생사례                             |
| 소양교육        |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성인지교육<br>반부패 청렴교육, 의용소방대 비위 사례                   |

- 전문교육

| 교과목(전문교육) | 교육내용                      |
|-----------|---------------------------|
| 화재진압실무    | 생활 속 화재예방                 |
|           | 화재 대피와 피난, 화재진압이론, 화재진압훈련 |
|           | 화재진압장비의 사용(통신장비 포함)       |
|           | 특수화재 대응                   |
|           | 산불의 예방과 감시, 산불진압 이론과 실습   |
| 현장안전관리    | 소방활동 안전관리의 특성             |
|           | 화재현장, 교통사고 안전관리           |
|           | 수난사고, 인파사고 안전관리           |
|           | 소방활동 안전관리지침               |
| 구조활동      | 교통사고와 구조활동                |
|           | 지진, 특수사고와 구조활동            |

| 교과목(전문교육) | 교육내용                         |
|-----------|------------------------------|
|           | 인명구조 실습-개인 및 팀단위             |
| 생활안전활동    | 생활안전대의 유형 및 활동장비, 생활안전활동 실습  |
| 구급활동      | 환자 이송체계 이해                   |
|           | 외상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
|           | 다수사상자 발생시의 환자분류              |
|           | 자원봉사와 구호활동                   |
| 소양교육      | 성인지 교육, 반부패 청렴교육, 의용소방대 비위사례 |
|           | 리더쉽 이론과 실제, 교수능력 향상          |

- 2022년 이후 교육훈련 현황

| 연도      | 구분        | 총계      | 센터<br>주관 | 소방서<br>주관 | 본부<br>주관 | 지방소<br>방학교 | 중앙소<br>방학교 | 안전<br>협회 | 자체<br>교육 | 사이버<br>교육 | 과제<br>평가 |
|---------|-----------|---------|----------|-----------|----------|------------|------------|----------|----------|-----------|----------|
| 24<br>년 | 횟수<br>(회) | 126,244 | 20,973   | 2,026     | 384      | 383        | 4          | 659      | 2,338    | 99,364    | 113      |
|         | 인원<br>(명) | 477,037 | 326,840  | 58,504    | 4,482    | 1,459      | 9          | 4,232    | 50,429   | 30,965.5  | 117      |
| 연도      | 구분        | 총계      | 센터<br>주관 | 소방서<br>주관 | 본부<br>주관 | 지방소<br>방학교 | 중앙소<br>방학교 | 안전<br>협회 | 자체<br>교육 | 사이버<br>교육 | 과제<br>평가 |
| 23<br>년 | 횟수<br>(회) | 103,178 | 18,986   | 2,079     | 186      | 367        | 15         | 721      | 1,096    | 79,686    | 42       |
|         | 인원<br>(명) | 426,460 | 303,143  | 51,326    | 2,409    | 1,522      | 57         | 2,223    | 27,851   | 37,750    | 179      |
| 연도      | 구분        | 총계      | 센터<br>주관 | 소방서<br>주관 | 본부<br>주관 | 지방소<br>방학교 | 중앙소<br>방학교 | 안전<br>협회 | 자체<br>교육 | 사이버<br>교육 | 과제<br>평가 |
| 22<br>년 | 횟수<br>(회) | 45,460  | 14,372   | 2,589     | 352      | 335        | 12         | 607      | 641      | 26,552    | 0        |
|         | 인원<br>(명) | 321,031 | 229,050  | 49,190    | 3,466    | 1,472      | 74         | 1,851    | 9,376    | 26,552    | 0        |